

[기자회견 보도자료]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 일시/장소 : 9월 27일(화) 오전 9시 40분 / 국회소통관

- 사회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순서 :

- ① 우원식 의원
- ② 이동주 의원
- ③ 황상기 반올림 대표(삼성반도체 백혈병 고향유미님의 아버지)
- ④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⑤ 기자회견문

■ 주최 :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도자료 목차]

<기자회견문>

<참고 자료>

- 첨부1.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첨부2. 황상기 반올림 대표(삼성반도체 백혈병 고향유미님의 아버지) 발언문
- 첨부3. 우원식 의원 발언문
- 첨부4. 이동주 의원 발언문
- 첨부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의 :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라 질병의 경우, 산재로 집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분은 작년에 414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성 암 환자는 1년에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1만 명 중에 단 414명만이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직업병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에겐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서 산재피해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직업병으로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노동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장 위험을 알려줄 안전보건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도 보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접근권도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알권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려 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넘쳐나지만, 반도체 산업의 위험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업이 지원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언론이 보도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빨 빠르게 대처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한 알권리는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기술은 3천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고려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이라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하여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2년 1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 국가들이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과 비슷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알권리 3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첨부1>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소관 보관대상 자료 및 자료보관기간 설정, 고용노동부의 관련 전산시스템 도입 등
- △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의무
- △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전·현직 노동자들의 공개 청구권 및 고용부장관의 자료 제공 의무 도입. 단, 부정한 목적 사용 시 처벌규정 신설

② 산업기술보호법

- △ 무차별적인 정보은폐를 방지하고자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 범위 개선
- △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절차 개선
-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에 대한 시행령에 의한 위임위법 문제점 해소
- △ 비밀유지의무 범위에 대한 시행령에 의한 위임위법 문제점 해소 및 대상자 명확화

③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하여 국가핵심기술 연계조항 삭제
- △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에 대한 시행령에 의한 위임위법 문제점 해소

<첨부2> 황상기 반올림 대표(삼성반도체 백혈병 고향유미님의 아버지) 발언

안녕하세요. 유미 아빠 황상기입니다.

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니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한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내라고 해야지, 피해자한테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 달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증거 받겠다고 따로 재판까지 했습니다.

산재피해자한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가 위험한지 알아야 피하든 고치든 할 텐데, 노동자들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피해자한테도 감추고, 노동자들에게도 감추면 그 공장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정부고 언론이고 난리입니다.

반도체에 세금도 쏟아 붓고, 규제도 없애주고, 학생들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도체가 중요하면 반도체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게 대접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만들다가 병들고 죽지 않도록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핵심기술 관련만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다 국가핵심기술이라면서, 그럼 반도체 공장 피해자들은 병들고 죽어도, 국가핵심기술이니 병에 걸린 이유도 알아보지 말란 말입니까?

산업기술 공장에 대해 알리면 처벌받게 해놓았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중에 산업기술 아닌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야지, 산업기술인지 따져보고 가만있으란 말입니까?

우원식 의원님과 이동주 의원님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법안 만들어주셨으니 꼭 통과될 수 있게 끝까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는 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3> 우원식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입니다.
오늘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님과 반도체노동자건강파인권지킴이 반울림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알권리3법” 폐기 지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아직도 OECD 산재사망율 1위라는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노동자들의 각종 산재사건을 보면 등 산업안전 문제는 아직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 그중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치료받고 나을 권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마저 죽도록 싸워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벽으로 남아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 이제 우리는 삼성반도체 산재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법원이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을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넘어 업무와 산재사이의 상당인과를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등 처음단계에서 산재를 판단하는 기관은 엄격한 의학적·과학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백번양보하여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위하여 의학적·과학적 입증을 하려고 해도 그 입증을 위한 정보접근은 현실적으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의해 “영업비밀, 기술보호”라는 미 영하에 정보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또 어떻습니까?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위해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영업비밀’이어서 안된다는 수많은 거절의 반복뿐입니다. 법은 있으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뀌기위해

오늘 법률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 첫째, 안전보건자료의 관리체계부터 확 바꿔야합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앞장서 안전보건자료의 구체적 목록을 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공개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의 발생원인분석과 산재발생시 입증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 둘째,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현직 노동자가 본인의 산재신청시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산재보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언제까지 자료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긴 공방속에 일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유족들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현실을 방치해야합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다.
- 누군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지만, 산재 피해노동자들에게 ‘알려고 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던 시대를 끝내야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위한 수단이 없는 법률은 법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법률답게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규범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된 법안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해 나가겠습니다. 법 통과를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4> 이동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 이동주입니다.

먼저 국민의 알권리와 산업현장의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는 국가의 주요 산업기술 보호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의一面에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개악 요인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보호, 그밖에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가 이전보다 더욱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독소 조항에 대해 사회각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오늘 우 원식 의원님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련 ‘국민 알권리 침해’ 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지난 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만 들어졌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공익적 목적으로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단서 조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공개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관계장관의 동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가 무력화되는 요인입니다.

실례로 삼성반도체 공장이 모두 국가핵심기술 사업장으로 지정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로 취급돼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특별한 기술 정보가 담겼다고 할 수 없는 안전진단보고서, 특별감독보고서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조사보고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보들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가 가능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예외 조항에 더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 밖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를 위한 절차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있는 만큼, 장관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보다 실효적인 절차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를 관련 소송을 통해 얻은 자료로 한정해, 정보공개청구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얻은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목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범위 역시 관련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한정하게 됐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과의 연계 조항을 삭제하고,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를 관련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정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는 결코 상호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된 ‘알권리 3법’을 통해 두 개의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27.
발 의 자 : 우원식 의원(○○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라 함)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보관되고 있고, 일부 자료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있음. 이러한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첫째,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관련 규정이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 기관들의 내부 규칙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고, 보관 기간도 3년~10년으로 짧음.

둘째, 노동자들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였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한 노동자·협력업체 노동자 등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음. 전·현직 노동자들이 산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되는 안전보건자료 등 일부 자료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등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동 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공개 범위가 넓고(어떤 자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현직 노동자들에게는 공개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셋째, 현행 산안법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 제1항 제3호),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① 우선 법률에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② 대상 자료에 대한 통합적·장기적 관리·보관 체계를 마련하며, ③ 노동자들에게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④ 개별 노동자들이 그 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주요내용

- 가.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8조의2)
- 나.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28조의 3),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안 제175조 2의2호).
- 다.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4). 다만 안전보건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 28조의5)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함(안 제170조 1의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안전보건자료의 보존·공개 등

제28조의2(안전보건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심사·이행 등에 관한 서류
 2. 제44조 등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심사·이행 등에 관한 서류
 3. 제47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서류
 4.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심의·이행 등에 관한 서류
 5.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및 중대한 건강장애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10조·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서류
 7. 제125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8. 제129조 등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9.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감독·검사 및 지도 등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존대상 서류(이하 “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안전보건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8조의3(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 사업주(도급인 및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 근무시기의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직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8조의4(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청구 등)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업 중이거나 작업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는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 안전보건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자료의 청구 및 제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 전 2조에 따라 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의5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의2 안전보건자료의 보존·공개 등</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8조의2(안전보건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심사·이행 등에 관한 서류</u> <u>2. 제44조 등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심사·이행 등에 관한 서류</u> <u>3. 제47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서류</u> <u>4.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심의·이행 등에 관한 서류</u> <u>5.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및 중대한 건강장애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u> <u>6. 제110조·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서류</u> <u>7. 제125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u> <u>8. 제129조 등에 따라 보고·제출받은</u>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의2 안전보건자료의 보존·공개 등</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8조의2(안전보건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심사·이행 등에 관한 서류</u> <u>2. 제44조 등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심사·이행 등에 관한 서류</u> <u>3. 제47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서류</u> <u>4.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심의·이행 등에 관한 서류</u> <u>5.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및 중대한 건강장애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u> <u>6. 제110조·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서류</u> <u>7. 제125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u> <u>8. 제129조 등에 따라 보고·제출받은</u>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9.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보고·

제출받은 감독·검사 및 지도 등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존대상 서류(이하 “안전보건자료”

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보건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 사업주(도급인 및 사용사업주

를 포함한다)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 근무시기의 안전보

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직 근

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8조의4(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청구

등)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업 중이거나 작업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는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 안전보건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자료의 청구 및 제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 ~ 8.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28조의5 전 2조에 따라 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0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의5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8조의3를 위반하여 정당한

	<p><u>사유없이 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자</u></p>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첨부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발 의 자 : 이동주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그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며, 부정한 방법·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술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제한적추상적이며 공개를 위한 절차 역시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 장관의 동의’, ‘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이에 이 같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항이 과도해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역시 현실화 해야 함.

주요내용

가. 정보 비공개 범위를 ‘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로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1.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2.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함(안 제9조2의 제1항)

- 나.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안 제9조2의 제2항)
-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14조의 8) 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의 10)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가핵심기술에”를 “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로, “정보를”을 “주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2.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4조제8호 중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로 한다.

제34조제10호 중 “청구,”를 “업무 및”으로, “관련”을 “유출 및 침해에 관한”으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을 “업무를”로, “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p> <p>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p>	<p>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p> <p>① ----- ----- ----- ----- ----- ----- <u>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 주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를</u> ----- <u>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u> ----- 1. <u>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u> 2. <u>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u> 3. <u>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u> 4. <u>그 밖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u> ② ----- -----</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p>	

<p>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 ----- ----- ----- ----- <u>위원회의</u>----- -----.</p>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 -----.</p>
<p>1. ~ 7. (생략) 8. <u>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u></p>	<p>1. ~ 7. (현행과 같음) 8. <u>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u>----- ----- ----- -----.</p>
<p>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p>
<p>1. ~ 9. (생략)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u>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u></p>	<p>1. ~ 9. (현행과 같음) 10. ----- <u>업무 및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업무를</u>----- ----- ----- ----- <u>공무원</u></p>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2. 9

발 의 자 : 이동주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어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됨.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는 과도한 비공개 조치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전략기술은 현행법의 별도 조항으로 보호를 받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는 불필요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5조 8호에서 정당하게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기만 해도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를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8호 중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을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⑥ (생 략)</p> <p><u>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u></p> <p>⑧ (생 략)</p> <p>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7. (생 략)</p> <p>8. <u>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u></p>	<p>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⑧ (현행과 같음)</p> <p>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 ----- ----- ----- ----- -----</u></p>